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822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마음수련 신앙 활동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10. 10. 14.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redacted]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10. 10. 29.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 종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1. 6. [redacted] [redacted]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2014. 11. 10.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16,372,510원, 농어촌특별세 3,274,500원 등을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등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합계 23,63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1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7. 1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직접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았던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이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면서 종전의 '사용'을 '직접 사용'으로 개정한 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가 취득한 부동산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본문의 예외를 규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의 요건에 해당한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논산시 D에 두며, 분사무소(지부)를 각 시도 및 해외에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법인의 목적은 E단체의 8단계 방법(이하 'E단체'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람이 거짓된 마음을 버려 진리의 마음으로 다시 나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인류평화를 구현하고 법인 소유 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E단체 신앙활동의 활성화
1. E단체 포교의 활성화 및 그 방안 개발
1. 법인재산의 유지 및 관리
1. 타 종교와의 협력 및 연합활동 강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1.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복지단체 등 지원
1.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목적달성을 위한 기타 수익사업

2) 원고는 2014. 11. 6.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4. 11. 1. F단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허가하였다. 한편 F단체는 2011. 3. 21. [redacted]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함을 이유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았다. F단체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명칭) 본회의 이름은 'F단체'(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redacted]시 [redacted]구 B빌딩 C호(이 사건 부동산)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마음수련을 통하여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진리의 마음으로 다시 나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인류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친교, E단체 신앙활동 및 E단체 포도의 활성화 사업 등을 한다.
제4조(소속) 본회의 소속은 A에 속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② 본회의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정회원만 의결권을 가진다.
1. 준회원: 마음수련 4과정까지의 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 마음수련 5과정 이상의 회원으로 E단체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종류와 임원회의 구성)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업무 의결기구로서 임원회의를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고문 약간명, 3. 부회장 약간명, 4. 총무 2인 이내, 5. 감사 1인
제18조(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칙변경안의 작성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본회 및 산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심의 의결
제2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3. 본회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보고서 승인
6. 사업계획 승인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본회 회계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본회 및 산하기관의 회계는 독립회계로 운영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37조(해산)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제1조(시행) 본 회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준거 규정) 본 회칙에 규정된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A의 정관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 본 개정 회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회칙의 시행당시 F단체의 회원은 이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한다.

3) F단체의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수지결산보고서에는 동호회비, 특별회비 등과 같은 수입과 지역분담금, 관리비, 공공요금, 홍보비 등과 같은 지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 차량 · 건설기계 · 선박 · 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 차량 · 건설기계 · 선박 · 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단체는 원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아닌 F단체가 사용한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에 대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일 2014. 1. 1.)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이는 '직접 사용'의 해석에 있어 그 주체를 소유자로 한정하기 위한 취지이다. 아울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 즉, 위탁사용에 관하여는 개별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 본문[1], 제50조 제2항 본문[2]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은 개별규정에서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수행에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2175호, 2014. 1. 1.> 제3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위 시행일 이후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된다.

1)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② 한편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닌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우 F단체는 독자적인 정관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정관에 따르면 임원회의에서 사업계획,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고(정관 제18조),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과 예산 및 결산보고서 승인에 대한 사항 등을 의결하며(정관 제23조),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산하고(정관 제37조), 회계 역시 독립회계로 운영되며(정관 제29조 제2항), 실제로 F단체는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회계처리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와는 별개의 비법인 사단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아닌 F단체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무상사용의 허가를 받아 사용·수익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의 '직접 사용'의 의미도 사용과 같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는 '직접 사용'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신설되면서 직접 사용의 의미를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사용에 관하여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이 이루어지더라도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김주성

판사 차선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별지

[표]

(단위: 원)

세목	본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취득세	16,372,510	3,274,500	1,665,080	21,312,090
농어촌 특별세	1,169,460		118,930	1,288,390
지방교육세	935,570		95,140	1,030,710
합계	18,477,540	3,274.500	1,879,150	23,631,19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④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⑤ 사찰림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경내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⑥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

부칙 <법률 제12175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